

온라인 강의 저작권 관련 주요사항 안내



서울대학교 교무처



01 온라인 강의 진행과 저작권(교원)

-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강의에 저작물을 일부 이용 -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허용
- 온라인 강의 중 제공되는 외부 자료 (이미지/어문저작물/웹페이지 등) 사용시 출처* 반드시 표기
 - eTL 공지사항 '저작권 가이드라인' 참조
- CCL(Creative Commons License)과 같은 자유이용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
- 수업목적 사용 시 저작권 위반 사례
 - 불법저작물 또는 미공표저작물 사용
 - 이용 범위를 넘은 사용: 서적 본문 1/3 이상 이용, 단편소설 등 전부 인용 등
 -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: 출판된 서적 복사 또는 스캔하여 온라인 전송, 복사물 제공



02 온라인 강의 진행과 저작권(교원)

○ 학생들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강의 전 다음 사항 안내

본 강의 콘텐츠에 포함된 다양한 저작물들은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수업 목적으로 허용한 범위 안에서만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. 만약, 그 범위를 넘어 위 저작물들이 이용되는 경우라면 저작권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강생들은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수업에 관한 저작권 소유자의 서면 승인 없이는 그 형태를 막론하고 복사, 녹화, 복제, 배포, 재출판, 다운로드, 게시,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수업과 관련 없는 사람 또는 단체와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

03 온라인 강의 수강과 저작권(학생)

- 수업을 위해 강의자료를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 25조에 따라 허용
- 금지 행위
 - 강의자료를 제3자에게 배포, 전송하는 행위
 - 강의자료를 제3자가 보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행위
 - 강의자료를 제3자가 이용하거나 접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(아이디 비밀번호 공유 등)

